송파구의회
Songpa District Council

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심사보고서
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25호
심사일자	2026. 10. 15. (목)

위원장 최 옥 주

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
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(우편번호 05584) / Tel : (02)2147-3600 / Fax : (02)2203-3108

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**심사보고서**

의안번호	제25호

2026년 10월 15일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10. 1. 송파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6. 10. 07.

다. 상정일자 : 2026. 10. 15. 제335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 설명의 요지 (양선희 여성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 및 위임된 위탁기간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에 따른 위원회 기능 조항 삭제(**안 제4조**)

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위탁기간 범위 현행화(**안 제14조**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7호(**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**)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 (**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**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강혜진)

○ 과거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입법 연혁(2012년 6월 29일 개정)의 취지를 살펴보면,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편중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고,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. 이에 본 개정안은 심의 사항 중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제도 개선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또한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비함으로써,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현장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, 위임된 위탁 기간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즉시성을 요구하는 사항임. 상위법과 정합성이 결여된 조례의 존치는 조례의 실효성과 지방행정의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향후 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

【 질의 : 이희승 위원 】

- 답변 : 양선희 여성보육과장

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8의2가 2025년에 개정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가 지연된 사유는?

-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야 했지만, 조례 개정 시기를 놓침. 향후 개정 사항 발생 시 검토 후 즉시 조례에 반영하겠음.

○ 안 제14조제3항에서 “3년 이상 5년 이내”에서 “5년 미만”으로 개정하였는데, 조례에 따른 위탁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조정 가능한 것인가?

- 3년 미만의 기간도 조정 가능함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